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제2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1일

순 천 시 의 회 의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2. 7. 11. ~ 7. 1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7월 18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alpff@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김미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684호
----------	--------

발의연월일 : 2022. 7. 6.

김미연 의원, 양동진 의원
강형구 의원, 유승현 의원
발의자 : 정광현 의원, 장경원 의원
유영갑 의원, 이영란 의원
정홍준 의원

1. 제정이유

-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신청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의 인·허가 접수 시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 나. 조례의 정의 (안 제2조)
- 다. 사전고지 대상 (안 제3조)
- 라. 업무부서의 지정 (안 제4조)
- 마. 사전고지의 내용과 방법 (안 제5, 6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5. 예산상황 :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순천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시민에게 신청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갈등유발 예상 시설의 인·허가 접수 시 인근 지역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인근 주민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시설”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5. “대상지역”이란 주민 거주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이 20호 이상 또는 자연마을이 있는 지역

제3조(사전고지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인·허가 민원 접수 시 대상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변전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 허가(신고) 대상인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일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지정(이하 “처리부서” 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를 지정(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사전고지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시설물 구조, 층수, 높이 및 용도 등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2. 인·허가 접수 일자 및 처리 기한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인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및 해당 이·통장에 서면 통지
2.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② 인·허가 준공 전·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5조의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

1. 조 례 명 : 순천시 갈등유발 예방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추가 비용 발생 요인 없음.

3. 미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4. 미침부 사유

○ 조례안은 예산 및 기금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5. 작성자 : 순천시의원 김 미 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9. 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바. 고압가스 충전소 · 판매소 · 저장소
- 사. 도료류 판매소
-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 자. 화약류 저장소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가. **축사**(양잠 · 양봉 · 양어 · 양돈 · 양계 · 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작물 재배사
- 바. 종묘배양시설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 · 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가. 하수 등 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라. 폐기물 처분시설
-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참고 2**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김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2021. 4. 8.	열린민원과
2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2020. 11. 6.	자치행정과
3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2021. 7. 12.	건축허가과
4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2021. 2. 26.	공동체새마을과
5	보령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2021. 11. 1.	건축허가과
6	부산광역시 강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2021. 1. 8.	건축과
7	부산광역시 기장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2020. 11. 27.	
8	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2021. 12. 10.	민원봉사과
9	서울특별시 노원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2022. 4. 28.	
10	여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2020. 12. 15.	시민소통담당관
11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2021. 7. 14.	종합민원과
12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2021. 4. 9.	민원과
13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2022. 3. 15.	
14	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2021. 3. 19.	허가민원과
15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2021. 2. 26.	건축허가과
16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2021. 7. 19.	허가민원1과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68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7. 7.

1. 개정이유

- 결손처분 용어를 변경하면서 사유를 구분하여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손처분’ 용어를 ‘정리보류’ 용어로 변경(안 제2조)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세징수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5. 2. ~ 5. 23.)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3.28.(가족보육과-844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4.20.(기획예산실-531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5. 2.(순천시 공고 제2022-1117호)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나목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급대상) ① (생 략)</p> <p>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생 략)</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u>결손처분</u> 자료의 제공</p> <p style="padding-left: 20px;">다. ~ 사. (생 략)</p> <p>③ ~ ⑤ (생 략)</p>	<p>제2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 <u>정리보류</u> -----</p> <p style="padding-left: 20px;">다. ~ 사.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상위법 개정내용 반영에 따른 것으로 비용 발생 없음

5. 작성자

○ 징수과

과장

문병태(☎ 749-6112)

징수행정팀장

이현태(☎ 749-3281)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68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7. 7.

1. 개정이유

-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조문이동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 상 예술품 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조항의 위치 변동사항을 반영(안 제4조)
 - 법 : 제71조의2제1항 → 제103조의3제1항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세징수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5. 2. ~ 5. 23.)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3.28.(가족보육과-844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4.20.(기획예산실-531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5. 2.(순천시 공고 제2022-1118호)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 을 각각 “법 제103조의3제1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u>법 제71조의2제1항</u>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u>법 제71조의2제1항</u>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 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p> <p>2.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p> <p>-----</p> <p>-----</p> <p>----- <u>법 제103조의3제1항</u> -----</p> <p>-----</p> <p>-----</p> <p>-----</p> <p>-----</p> <p>-----</p> <p>-----</p> <p>1. -----</p> <p>----- <u>법 제103조의3제1항</u> -----</p> <p>-----</p> <p>-----</p> <p>-----</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상위법 개정내용 반영에 따른 것으로 비용 발생 없음

5. 작성자

○ 징수과

과장

문병태(☎ 749-6112)

징수행정팀장

이현태(☎ 749-3281)

순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368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7. 7.

1. 제정이유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순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제정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정책자문단 구성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예산의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3. 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3.15. ~ 4. 4.)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3. 8.(여성가족과-629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2. 22.(기획예산실-261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3. 2.(순천시 공고 제2022-584호)

순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스포츠 관련 인프라 육성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드론 활용의 촉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
4. 주민·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문화재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사업과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드론산업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 ① 시장은 순천시 드론산업의 정책 자문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시에 드론산업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단은 드론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산업 발굴, 사업기획 협조, 국비확보 협조 등
 2. 드론산업 발전에 관한 자문 및 정책대안 제시 등
 3. 그 밖에 드론산업과 관련된 각종 협력사업 발굴 등
- ③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단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시장은 드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9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제7조 정책자문단 자문료

○ 제9조 예산의 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 어려움

<산출근거>

■ (2022년) 4회 × 200,000원 × 15명 = 12,000,000원 *1회 2시간 기준

■ (2023년) 4회 × 200,000원 × 15명 = 12,000,000원

■ (2024년) 4회 × 200,000원 × 15명 = 12,000,000원

※ 2022년 자문료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으로 1회당 2시간
계산 추후 인원수 등 변동가능

5. 작성자

○ 미래산업과 과장 채종욱(☎ 749-4400)

 첨단산업팀장 이진숙(☎ 749-4404)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690호
----------	--------

- 제출자 : 순천시청
- 제출일시 : 2022. 7. 7.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등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목 이름 변경
 - 제2조(설치종목) 정구 → 소프트테니스
- 오래된 문구 및 조문 정비
 - (정비) 제4조, 제7조, 제11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제5조(직장운동경기부협회)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근거
 - 제6조(인권보호 조치 등)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근거
 - 제7조(자격)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제1항에 근거

3. 일부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0조의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 4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4. 15. ~ 2022. 5. 6.)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3. 25.(기획예산실-408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4. 15.(순천시 공고 제2022-878호)
- 성별영향 분석평가 : 2022. 3. 28.(가족보육과-8442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 5” 로 한다.

제2조 중 “정구” 를 “소프트테니스” 로 한다.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순천시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구성원은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④ 협의회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⑤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1년에 1회 이상은 개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협의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협의회 설립, 가입 범위, 그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자격) 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선수 경력과 해당 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공개모집하

여야 한다.

③ 선수는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공개모집 할 수 있다. 다만, 우수선수는 우선 채용할 수 있다.

제11조(중전의 제9조)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그 밖의 사회적 물의 등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민체육진흥법</u>」 제10조에 따라 순천시청 직 장운동경기부(이하“경기부”라 한 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국민체육진흥법</u>」 제10조 및 제10조의 5----- ----- ----- ----- -----.</p>
<p>제2조(설치종목) 경기부의 종목은 <u>정 구</u>, 양궁, 유도로 하고 단원의 수는 <u>규칙</u>으로 정한다.</p>	<p>제2조(설치종목) ----- <u>소프트테니스</u>, ----- -----.</p>
<p>제3조(구성) ① ~ ③ (생 략)</p>	<p>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임무) ① ~ ⑥ (생 략) ⑦ < 신 설 ></p>	<p>제4조(임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u></p>
<p>< 신 설 ></p>	<p><u>제5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u> ① <u>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순천시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 ② <u>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현행	개정안
	<p>③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p> <p>④ 협의회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p>⑤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1년에 1회 이상은 개최하여야 한다.</p> <p>⑥ 시장은 협의회와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협의회 설립, 가입 범위, 그</p>

현행	개정안
<p data-bbox="231 488 438 533">< 신설 ></p> <p data-bbox="215 1579 406 1624"><u>제5조(자격)</u></p> <p data-bbox="247 1635 829 1915">① (생략) ② 지도자는 <u>선수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u></p>	<p data-bbox="885 302 1476 459"><u>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u></p> <p data-bbox="853 481 1244 526"><u>제6조(인권보호 조치 등)</u></p> <p data-bbox="869 548 1476 772">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ol data-bbox="885 806 1476 1321" style="list-style-type: none"> 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p data-bbox="869 1355 1476 1556">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 data-bbox="853 1579 1292 1624"><u>제7조 (현행 제5조와 같음)</u></p> <p data-bbox="885 1635 1476 1982">① (현행과 같음) ②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선수 경력과 해당 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③ 선수는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p> <p>제6조 ~ 제8조(생략)</p> <p>제9조(계약해지)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1. (생략)</p> <p><신설></p> <p>2. ~ 7. (생략)</p> <p>제10조 ~ 제13조(생략)</p>	<p>③ 선수는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u>공개모집</u> 할 수 있다. 다만, <u>우수선수는 우선 채용</u> 할 수 있다.</p> <p>제8조 ~ 제10조(현행 제6조~제8조와 같음)</p> <p>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그 밖의 사회적 물의 등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u></p> <p>3. ~ 8. (현행 2. ~ 7.과 같음)</p> <p>제12조 ~ 제15조(현행 제10조 ~ 제13조와 같음)</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 재정수반요인 : 제5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산출근거>

- (2022년) 1회 × 100,000원 = 100,000원 * 하반기
- (2023년) 2회 × 100,000원 = 200,000원
- (2024년) 2회 × 100,000원 = 200,000원

※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및 2022년도 순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순천시)에 근거

5. 작성자 : 순천시청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행정9급 임영훈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69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7. 7

1. 개정이유

- 상위법에서 개정된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기관 명칭 변경으로 인한 직위명 등을 현행화하여 협의회 기능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협의회의 심의사항(제2조)
 - (제2호제나목) 명칭변경 (개정) 향토예비군 → 예비군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조제2항)
 - (제2호) 명칭변경 (개정) 순천지구기무대장 → 군사안보지원대장
 - (제3호) 명칭변경 (개정) 국가정보원여수지소장 → 국가정보원여수지역본부장
 - (제8호) 명칭변경 (개정) 순천보훈지청장 → 전남동부보훈지청장
 - (제12호) 협의회 위원 추가 (개정) → 여수해양경찰서장
 - (제13호) (신설) →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기관·단체장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별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4. 15. ~ 5. 6.)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3. 30.(안전총괄과-569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3. 25.(기획예산실-408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4. 15.(순천시 공고 제2022-874호)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향토예비군” 을 “예비군” 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제3호, 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사안보지원대장
3. 국가정보원여수지역본부장
8. 전남동부보훈지청장
12. 여수해양경찰서장

제3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기관·단체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협의회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략)</p> <p>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 대책</p> <p style="padding-left: 2em;">가. (생략)</p> <p style="padding-left: 2em;">나. <u>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u></p> <p style="padding-left: 2em;">다.·라. (생략)</p> <p>3.·4. (생략)</p> <p>제3조(협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p> <p>② 협의회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p>1. (생략)</p> <p>2. <u>순천지구기무대장</u></p> <p>3. <u>국가정보원여수지소장</u></p> <p>4. ~ 7. (생략)</p> <p>8. <u>순천보훈지청장</u></p> <p>9. ~ 11. (생략)</p> <p>12. <u>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u></p> <p><신설></p> <p>③·④ (생략)</p>	<p>제2조(협의회회의 심의사항)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p> <p style="padding-left: 2em;">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em;">나. <u>예비군</u>----- ----- ----- -</p> <p style="padding-left: 2em;">다.·라. (현행과 같음)</p> <p>3.·4. (현행과 같음)</p> <p>제3조(협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군사안보지원대장</u></p> <p>3. <u>국가정보원여수지역본부장</u></p> <p>4. ~ 7. (현행과 같음)</p> <p>8. <u>전남동부보훈지청장</u></p> <p>9. ~ 11. (현행과 같음)</p> <p>12. <u>여수해양경찰서장</u></p> <p>13. <u>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기관·단체장</u></p> <p>③·④ (현행과 같음)</p>

[별첨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5. 작 성 자

○ 안전총괄과 과장 서 규 원 (☎ 749-5466)
 민방위팀장 한 금 희 (☎ 749-5665)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69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2. 7. 7.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

2. 주요내용

- 시 조례 [별표 6] 과태료 부가기준 변경
-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할 수 있는 부과기준 마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경우 산정금액의 2배 적용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2. 28 ~ 3. 21.)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2. 21.(가족보육과-434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4. 18.(기획예산실-518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2. 28.(순천시 공고 제2022-547호)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개정 0000.00.00.>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제2호가목에 대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 나.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² 초과 0.5m² 이하는 0.5m²로 0.5m² 초과 1.0m² 미만은 1.0m²로 계산한다.
-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 라. 현수막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49만원	64만원	84만원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32만원	42만원	55만원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20천원	30천원	45천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30천원	40천원	55천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40천원	50천원	65천원

		50천원	60천원	80천원
라) 30장 초과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13천원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28천원
다)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67만원	
1) 30일 이상 90일 미만			11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2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00만원	
4) 1년 이상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6]</p> <p style="margin-left: 20px;"><u><신 설></u></p>	<p>[별표 6]</p> <p>1. 일반기준</p> <p style="margin-left: 20px;">가. 제2호가목에 대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 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나.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² 초과 0.5m² 이하는 0.5m²로 0.5m² 초과 1.0m² 미만은 1.0m²로 계산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p> <p style="margin-left: 20px;">라. 현수막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한다.</p>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엽 제3조 제3호외의 제5호 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를 표시 및 제1호외의 경우	법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외의		
가. 입간판			
1) 도·광역시도를 표출한위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이하		13만원	
- 0.6㎡ 이상 0.9㎡ 이하		22만원	
- 0.9㎡ 이상 1.0㎡ 미만		32만원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42만원	
- 1.4㎡ 이상 1.6㎡ 이하		50만원	
- 1.7㎡ 이상 2.0㎡ 미만		64만원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75만원	
- 2.4㎡ 이상 2.6㎡ 이하		100만원	
- 2.7㎡ 이상 3.0㎡ 미만		129만원	
라) 면적 3㎡ 이상		130만원+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다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이하		8만원	
- 0.6㎡ 이상 0.9㎡ 미만		12만원	
- 0.9㎡ 이상 1.0㎡ 미만		14만원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25만원	
- 1.4㎡ 이상 1.6㎡ 이하		33만원	
- 1.7㎡ 이상 2.0㎡ 미만		49만원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58만원	
- 2.4㎡ 이상 2.6㎡ 이하		67만원	
- 2.7㎡ 이상 3.0㎡ 미만		79만원	
라) 면적 3㎡ 이상		80만원+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다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8만원	
- 1.1㎡ 이상 2.0㎡ 이하		12만원	
- 2.1㎡ 이상 3.0㎡ 미만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22만원	
- 3.8㎡ 이상 4.4㎡ 이하		25만원	
- 4.5㎡ 이상 5.0㎡ 미만		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42만원	
- 6.1㎡ 이상 8.0㎡ 이하		58만원	
- 8.1㎡ 이상 10.0㎡ 미만		75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다한 금액 이하	
2) 이를 설치하여 자정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에 원거히 장애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상당 17만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상당 25만원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엽 제3조 제3호외의 제5호 제1항제1호	법 제3조 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45만원	64만원	84만원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0만원+ 8만원을 다한 금액	105만원+ 10만원을 다한 금액	135만원+ 13만원 을 다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32만원	42만원	55만원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0만원+ 10만원 을 다한 금액	105만원+ 20만원 을 다한 금액	135만원+ 25만원 을 다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28만원	30만원	45만원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38만원	40만원	55만원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48만원	50만원	65만원
라) 30장 초과		58만원	60만원	80만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상당 8만원	상당 10만원	상당 13만원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상당 17만원	상당 22만원	상당 28만원
다) 21장 이상		상당 25만원	상당 32만원	상당 42만원
나. 법 제10조제4에 따른 제1호외의 제5호 제1항제1호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가압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단위에 1일씩부터 계산하여 1일이다 3천원을 다한 금액	
2) 가압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단위에 1일씩부터 계산하여 1일이다 1만원을 다한 금액	
3) 가압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단위에 1일씩부터 계산하여 1일이다 200원을 다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3) 180일 이상 1년 미만			227만원	
4) 1년 이상			48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80만원	1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용·예술용이 아닌 경우	법 제20조 제2항	30만원	50만원	100만원

→ 21장 이상		장당 42천원
2) 법 제50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5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과. 판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2) 법 제50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5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3. 법 제105제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다)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제부터 계산하여 2일이다 5천원을 대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1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11일제부터 계산하여 1일이다 1만원을 대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31일제부터 계산하여 1일이다 2만원을 대한 금액
3. 법 제110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67천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천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천원
라. 1년 이상		400천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를 실명해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천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천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천원
5. 법 제123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물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천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천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천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삭 제>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7. 현수막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한다.